|  |  |  |
| --- | --- | --- |
|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등 관련사항 조정에 대한 통지**  보감발[2012]10호  각 보험감독국,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보험중개기구, 외국보험기구 대표처: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인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발개가격 [2011] 3228호)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범위, 요금기준과 요금수취방법 등 관련 사항 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범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비준을 받고 아래와 같은 피감독관리기구로부터 보험업무 감독관리 비용을 수취한다.  (1) 각종 상업보험회사  (2)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  (3) 외국보험기구 대표처  (4) 보험자산관리회사  2.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1)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을 인하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책임보험과 단기 건강보험업무는 보험회사의 연도보유 보험료의 1.6‰에서 1.3‰로 인하하여 수취하며, 기타 재산보험업무, 개인상해보험업무는 보험회사 연도보유 보험료의 1.7‰에서 1.45‰로 인하하여 수취한다.  ②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장기생명보험업무는 보험회사의 연도보유 보험료의 0.9‰에서 0.75‰로 인하하여 수취하며,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장기건강보험업무는 연도보유 보험료의 0.8‰에서 0.65‰로 인하하여 수취한다.  상술한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의 2012년과 2013년 요금율은 상기 기준에 따라 해마다 10%씩 체감한다. 그 중, 보험료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유보험료란 보험료에 수재보험료를 더하고 출재보험료를 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③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정책성 수출신용보험업무, 농업보험업무,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업무, 농촌 소액개인보험업무와 계획생육보험업무는 여전히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을 면제한다. 그 중, 농업보험업무란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재배업, 양식업 등의 농업산업 생산과정에서의 특정 자연재해, 사고 혹은 역병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업무를 말한다.  (2)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로부터 수취하는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을 조정한다.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그 대행업무 영업수입의 1.2‰에서 0.9‰로 인하하여 수취한다. 그 중, 보험대행기구, 손해사정기구는 매년 매 기구당 800위안이상으로부터 3,000위안 이상으로 조정하며 보험중개기구는 매년 매 기구당 1,200위안이상으로부터 5,000위안 이상으로 조정한다.  (3) 외국보험기구 대표처로부터 수취하는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은 여전히 대표처마다 매년 2만 위안 기준으로 수취한다.  (4)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수탁 관리업무 경영에 대한 감독관리비는 최고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서 수취한다.  3.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 징수단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외국보험기구 대표처의 보험업무 감독관리비 징수기관이다. 각 보험감독국은 보험중개업무 전문 종사기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각 징수단위의 계좌정보는 첨부파일 2 참조)을 책임지고 징수한다  4. 보험업무 감독관리비 납부방법  (1)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법인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일괄 납부하며, 분기별 납부 연말 정산방법을 취한다.  보험회사는 직전연도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본 연도 예납액을 계산하여 분기별로 균등하게 납부하며,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액부분은 연말결산 때 정산한다. 실제 납부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 시에는 차기 연도에 납부해야 할 보험업무 감독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  연간 납부금액이 5만 위안 미만인 보험회사는 1차적으로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2)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법인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일괄 납부하며, 1차적으로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는 상응한 최저납부금액에 따라 일차적으로 납부하며 실제납부금액과 당년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액부분은 연말결산 때 정산한다.  (3) 외국보험기구 대표처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2만 위안의 정액기준으로 일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취한다.  (4) 보험자산관리회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30만 위안의 정액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취한다.  (5) 신규 설립한 기구는 당년도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6)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위안”단위까지 계산한다. 집행단위는 은행에서 제출한 수금증명서류에 근거하여 <비 세금수입 일반납부서>를 발급한다. 납부자는 소재지 보험감독국에서 납부영수증을 발급받는다.  5. 납부시간  (1) 분기별 납부시간은 매 분기의 첫 달 10일전으로 한다.  (2) 일차적으로 납부하는 시간은 매년 4월 30일전으로 한다.  (3) 연말 정산시간은 차기 연도의 4월 30일전으로 한다.  6. 감독검사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각 보험감독국은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을 납부한 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규정을 어기고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지연 납부한 단위에 대해서는 보충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본 통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유효기한은 3년이다. 2008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반포한 <보험업무 감독요금기준 및 수취방법 관련 사항 조정에 대한 통지>(보감발[2008]121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  1.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인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발개가격[2110]3228호)  2. 각 징수단위의 중앙재정 상납전용계좌 개설 은행 및 계좌  3. 보험기구의 보험업무감독 관리요금 납부보고서  <http://www.circ.gov.cn/Portals/0/attachments/2012/保监发10附件2和3.rar>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2년 1월 29일 |  | **关于调整保险业务监管费收费**  **标准等有关事项的通知**  保监发〔2012〕10号    各保监局、保险公司、保险资产管理公司、保险中介机构、外国保险机构代表处:  　　根据《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降低保险业务监管费收费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发改价格〔2011〕3228号）规定，现将调整保险业务监管费收费范围、收费标准和收费办法等有关事项通知如下：  　　一、保险业务监管费收费范围  　　经批准，中国保监会对下列被监管机构收取保险业务监管费：  　　（一）各类商业保险公司；  　　（二）专门从事保险中介业务的机构；  　　（三）外国保险机构代表处；  　　（四）保险资产管理公司。  　　二、保险业务监管费收费标准  　　（一）降低对保险公司收取的保险业务监管费收费标准。  　　1.对保险公司经营的责任保险和短期健康保险业务，由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1.6‰降为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1.3‰收取；对其他财产险业务、人身意外险业务，由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1.7‰降为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1.45‰收取。  　　2.对保险公司经营的长期人寿保险业务，由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0.9‰降为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0.75‰收取；对保险公司经营的长期健康保险业务，由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0.8‰降为按保险公司年度自留保费的0.65‰收取。  　　上述保险业务监管费2012年和2013年的费率按上述标准逐年递减10％。其中，保费是指投保人按保险合同约定向保险公司支付的费用；自留保费是指保费加上分入保费减去分出保费。  3.对保险公司经营的政策性出口信用保险业务、农业保险业务、新型农村  合作医疗保险业务、农村小额人身保险业务和计划生育保险业务仍免收保险业务监管费。其中，农业保险是指保险公司经营的对种植业、养殖业等农业产业在生产过程中因受特定自然灾害、事故或者疫病所造成的经济损失进行赔偿的保险业务。  　　（二）调整对专门从事保险中介业务的机构收取的保险业务监管费收费标准。对专门从事保险中介业务的机构，由按代办业务营业收入的1.2‰降为按代办业务营业收入的0.9‰收取。其中，保险代理机构、保险公估机构由每年每家不低于800元调整为不低于3000元，保险经纪机构由每年每家不低于1200元调整为不低于5000元。  　　（三）对外国保险机构代表处收取的保险业务监管费标准，仍按每年每个代表处2万元执行。  　　（四）对保险资产管理公司经营受托管理业务收取的监管费，按最高不超过30万元收取。  　　三、保险业务监管费执收单位  　　中国保监会负责收缴各保险公司、保险资产管理公司和外国保险机构代表处的保险业务监管费；各保监局负责收缴专门从事保险中介业务机构的保险业务监管费（各执收单位的缴费账户信息见附件2）。  　 四、保险业务监管费缴纳办法  　　（一）保险公司的保险业务监管费由法人机构统一汇缴，采取按季缴费、年终清缴的办法。  　　保险公司应以上年自留保费为基数计算本年预缴额，按季度平均缴纳，与当年应缴额的差额部分待年终决算后清缴。对于实缴额大于应缴额的部分，可抵扣今后年度应缴纳的保险业务监管费。  　　对于年缴费额不足5万元的保险公司，可采取一次性缴费、年终清缴的办法。  　　（二）专门从事保险中介业务机构的保险业务监管费由法人机构统一汇缴，采取一次性缴费、年终清缴的办法。  　　专门从事保险中介业务的机构应按照相应的最低缴费额一次性缴纳，实缴额与当年应缴额的差额部分待年终决算后清缴。  （三）外国保险机构代表处的保险业务监管费采取按2万元定额标准一次性缴纳的办法。  　　 （四）保险资产管理公司的保险业务监管费采取按30万元定额标准一次性缴纳的办法。  　（五）新批设的机构应缴纳当年的保险业务监管费，采取年终清缴的办法。  　 （六）保险业务监管费的缴费单位计算到“元”。执收单位凭银行收款凭证开据《非税收入一般缴款书》。缴款人在当地保监局领取缴费收据。  　　五、缴款时间  　　（一）按季度缴纳时间为每季度首月10日前。  　　（二）一次性缴费时间为每年4月30日前。  　　（三）年终清缴的时间不得晚于次年4月30日。  　　六、监督检查  　　中国保监会和各保监局对应缴纳保险业务监管费的缴款人有权进行监督检查。对违反规定少缴、迟缴保险业务监管费的，可以责令其补缴。对拒不缴纳保险业务监管费的，可以依法给予行政处罚。  　　本通知自2011年1月1日起执行，有效期3年。2008年中国保监会下发的《关于调整保险业务监管费收费标准及收费办法有关事项的通知》（保监发〔2008〕121号）同时废止。    附件：  1、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降低保险业务监管费收费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发改价格〔2011〕3228号）  　　2、各执收单位中央财政汇缴专户开户银行及账号  　 3、保险机构缴纳保险业务监管费报告单  <http://www.circ.gov.cn/Portals/0/attachments/2012/保监发10附件2和3.rar>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二〇一二年一月二十九日 |